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 (02-2100-2690)	담 당 자	허남혁 주무관 (02-2100-2695)
	금감원 회계심사국장 장 석 일 (02-3145-7700)		강석원 팀장 (02-3145-7710)
	금감원 회계조사국장 홍 순 간 (02-3145-7290)		이승민 팀장 (02-3145-7734) 이현영 팀장 (02-3145-7308)

제 목 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· 감리결과 조치

-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12일 제3차 회의에서,
 -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· 공시한 (주)에스제이케이에 대하여 감사인지정,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,
 -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- 동일이사 교체의무 등 舊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
--	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(붙임)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3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0.2.12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에스제이케이</p> <p>결산기 : 2013.12.31. 2014.12.31.</p> <p>코스닥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전자제품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이연법인세부채 누락 (‘13년 연결·별도 3,350백만원, ‘14년 연결·별도 3,333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공장용지와 건물 등의 재평가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재무제표에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</p> <p>②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 과대계상 (‘13년 연결·별도 2,621백만원·3,921백만원, ‘14년 연결·별도 11,731백만원·6,283백만원 등)</p> <p>- 회사는 유상사급거래에 대해 순액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‘13년 및 ‘14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,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을 과대계상함</p> <p>③ 개발비 과대계상 등 (‘13년 연결·별도 343백만원·184백만원, ‘14년 연결·별도 1,178백만원·1,256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개발비(자산)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인식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</p> <p>④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기재 누락 (‘13년 연결·별도 2,612백만원, ‘14년 연결·별도 2,614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○○○○○○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식사항에 관련 거래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⑤ 소액공모공시서류의 기재위반</p> <p>- 회사는 ‘14.5.9. 및 ‘15.6.25. 소액공모공시서류에 이연법인세부채 등이 누락된 제19기(‘13년) 및 제20기(‘14년)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 23.6백만원</p> <p>- 과태료 25백만원</p> <p>- 감사인지정 1년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(주)에스제이케이	<p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‘13년 연결·별도 3,350백만원, ‘14년 연결·별도 3,333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회사가 재평가한 공장용지와 건물의 매각시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이연법인세부채를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② 매출 수익인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‘13년 연결·별도 2,621백만원·3,921백만원, ‘14년 연결·별도 11,731백만원·6,283백만원 등)</p> <p>- 감사인은 매출 수익인식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(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)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③ 개발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‘13년 연결·별도 343백만원·184백만원, ‘14년 연결·별도 1,178백만원·1,256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개발비의 자산인식 요건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무형자산(개발비) 과대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</p>	<p>이지회계법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% - (주)에스제이케이 감사업무제한 1년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주)에스제이케이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4시간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한울회계법인	<p>①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</p> <p>【감사인】</p> <p>- 舊외부감사법에 의하면, 감사인은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,</p> <p>감사인은 이사 000로 하여금 주권상장법인인 000 및 0000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(2011~2013년)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 (2016년)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</p> <p>【공인회계사】</p> <p>- 舊외부감사법에 의하면, 회계법인의 이사는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후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,</p> <p>이사인 공인회계사 000은 주권상장법인인 000 및 0000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(2011~2013년)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후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 (2016년)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</p>	<p>한울회계법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각 회사별 30% - 000 및 0000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<p>공인회계사 : 1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권상장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- 000 및 0000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- 직무연수 16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신한회계법인</p>	<p>①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</p> <p>【감사인】</p> <p>- 舊외부감사법에 의하면, 감사는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,</p> <p>감사는 이사 000으로 하여금 주권상장법인인 00000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(2009년~2011년)에 대해 담당이사로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,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(2013년~2014년)에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이사로서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</p> <p>【공인회계사】</p> <p>- 舊외부감사법에 의하면, 회계법인의 이사는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후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,</p> <p>이사인 공인회계사 000은 주권상장법인인 00000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(2009년~2011년)에 대해 담당이사로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,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(2013년~2014년)에 담당이사로서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</p>	<p>신한회계법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% - 00000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<p>공인회계사 : 1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권상장(코스닥·코넥스 상장 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- 00000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- 직무연수 8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)